

# 사 업 방 법 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무배당하나머니플랜보험

#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하나머니플랜보험

### 2. 보험료 납입기간, 보험기간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
7년만기	3년·5년·7년납
10년만기	3년·5년·7년·10년납

### 3. 가입연령

만 15세 ~ (70 - 년만기) 세

### 4. 보험료 납입주기

월납

### 5. 납입보험료 한도

- 기본보험료 - 1구좌 당 월 40만원 ~ 100만원
- 추가납입보험료 - 연간 기본보험료의 100% 이내로 함.

### 6. 배당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.

### 7.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

월납보험료 × 12 × min { 보험료납입기간, 10 }

## 8. 저축계약 순보험료의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

- ① 이 보험의 저축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「공시이율」로 한다.
- ②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.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,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한다

### ③ 공시기준이율의 산출

-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.

공시기준이율 산출식 = (내부지표 + 외부지표) / 2

- 내부지표 산출식 = 
$$\frac{2 \times (I - E)}{A_6 + A_0 - (I - E)} \times \frac{12}{6} \times 100$$

- I: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수익

- E: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비용

- A: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.

A<sub>6</sub>: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

A<sub>0</sub>: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

- 외부지표 산출식 = (B1 + B2 + B3) / 3

- B1: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B2: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B3: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가중이동평균이율 (B<sub>i</sub>) = 
$$\frac{B_i(-3) \times 1 + B_i(-2) \times 2 + B_i(-1) \times 3}{6}$$

B<sub>i</sub>(-3):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

B<sub>i</sub>(-2):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

B<sub>i</sub>(-1):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
-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(AA-)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
-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(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.) 중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. 단,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.

-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 일자 정기예금이율, 각월의 직전 1 월의 16 일부터 각월의 당월 15 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.
  -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,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.
  -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.
- ④ ②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(②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)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
-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.
- ⑥ 부리이율은 연복리 3.0%를 최저한도로 한다.
- ⑦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.
- ⑧ 3년 미만 경과 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보험료 납입경과기간	중도해지이율
1년 미만	연 3.0% 복리
2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80%, 3.0%)
3년 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90%, 3.0%)

## 9.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
## 10. 추가하는 특약

무배당정기특약, 무배당재해사망특약, 무배당재해상해특약, 무배당입원특약Ⅱ, 무배당암보장특약

## 11. 기타

가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,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.5%로 한다. 단,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

우에는 적립액의 인출이 불가능하다. 또한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인출할 수 있다.

- ①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
  - ②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
  - ③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
  - ④ 계약자가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
  - ⑤ 계약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
  - ⑥ 기타 계약자가 가계생활자금, 학자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액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
- 단, 이 경우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%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4 회에 한함.

#### 나. 연체이자율

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「공시이율」을 적용함.

#### 다. 선납보험료

선납보험료는 당월 분을 포함하여 12 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,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.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된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,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.

라. 동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.

(별첨 제 1 호)

## 보험증권의 서식

(별첨 제 2 호)

##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